

울산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7가합1000(본소), 2019가합17450(반소) 판결

[구상금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 2021. 2. 4 선고 2020나51276(본소), 2020나51283(반소)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7가합1000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A영농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강창옥, 고경우, 김렬구, 안상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상우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창열

변론종결 2019. 12. 18.

판결선고 2020. 1. 22.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94,601,2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2020.

1.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6/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723,537,0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89,411,900원 및 그 중 195,209,300원에 대하여는 2015. 4. 1.부터, 나머지 194,202,6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1.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인근 양계농가의 협업을 위해 2011. 10. 19.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양산시 C에서 D농장이라는 상호로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배합사료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전신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에서 2015. 3. 27. 상호가 E으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16. 12. 8. E에 원금 615,702,114원과 이자 107,834,898원 합계

723,537,01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E에 사료대금 원금 615,702,114원과 이자 107,834,89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합계 723,537,0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E과 직접 사료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E으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은 원고로부터 별도로 공급받은 것이므로, E에게 사료대금을 지급할 책임은 그의 거래상대방인 원고에게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변제한 것이 아니다.

2)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2017. 1. 25.경부터 2017. 4. 28.경까지 원고의 요청으로 사료대금 합계 474,523,45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2. 11.경부터 2012. 1.경까지 공급받은 사료대금은 합계 4,266,611,314원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계란대금에서 사료대금 명목으로 공제된 액수는 합계 4,225,813,914원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미지급한 사료대금은 그 차액인 40,797,400원에 불과함에도,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2012. 2.경부터 2016. 9.경까지 사료대금으로 합계 235,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그 중 40,797,400원을 초과한 금액인 194,202,600원은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다.

4)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의 계란을 위탁판매하여 피고에게 계란대금을 매달 지급하였어야 했는데, 그 계란대금에서 원인 없이 이자와 행사지원금 명목의 돈을 공제하였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반소로써, 위 과지급된 사료대금과 원인없이 공제처리된 이자, 행사지원금의 반환을 구함과 동시에, 본소 청구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동안 사료대금의

정산이 과도하게 이루어진 만큼 공제받고자 한다.

3. 판단

가. 원고, 피고, E 사이의 거래관계

1) 본 · 반소청구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그 전제되는 원 · 피고와 E 사이의 거래관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7, 29, 30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02년경부터 F 등 사료공급업체와 직접 사료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사료공급을 받아왔고, 피고가 설립된 이후부터는 피고를 통하여 사료를 공급받아 왔으나, F이 E으로 상호가 변경된 2015. 5.경 E과 사이에 한도액 860,000,000원으로 정한 사료거래약정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 ② 피고는 E에 2012. 12. 31.자 기준 미지급 사료대금이 372,877,088원, 2014. 5. 31.자 기준 690,064,326원이라는 물품대금잔액확인서, 2015. 2. 28.자 기준 미지급 사료대금이 총 815,702,114원임을 확인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기도 한 사실(피고는 위 물품대금잔액확인서에 기재된 의사표시는 원고로 인해 유발된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로 인해 유발된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E과 사이에 직접 사료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사료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계약당사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나아가 같은 증거에 의하면 ③ 피고를 비롯한 인근 양계농장주들은 출하물(계란)의 공동 판매를 통한 안정적 수익과 거래처 확보, 사료대금 지급의 편의 등을 위해 원고를 통해 계란을 판매하고 사료를 구입하는 형식을 취한 사실, ④ 즉, 원고는 인근 양계농장주들이 출하한 계란의 대외적 판매 · 유통, 농가운영에 필요한 사료 구매대행을 맡으면서 계란대금(수입)에서 직접 사료공급업체에 사료대금(비용)을 지급하고, 양계농장주들에게는 수입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정산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 온 사실, ⑤ 원고는 피고의 사료거래약정서와 각 잔액확인서에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주변 다른 양계농가와 함께 원고라는 단일한 창구를 통하여 사료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해온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E에 피고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사료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액수만큼 원고가 피고의 계란대금에서 정산(공제)하였다면, 이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그 사료대금을 구상해줄 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사료공급계약의 당사자로서 자신이 공급받은 사료에 관하여 직접 책임을 지므로, 원고가 E에 피고의 사료대금을 연대보증의 이행으로서 지급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구상해줄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16. 12. 8. E에 원금 615,702,114원과 이자 107,834,898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2016. 9. 무렵 피고의 E에 대한 사료대금(원금)은 615,702,114원인 사실, 원고가 E에 지급한 이자 명목의 돈은 피고가 E에게 지급해야 할 사료대금의 지연손해금으로 합의된 돈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723,537,0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본소에 대한 피고의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1. 25.경부터 2017. 4. 28.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474,523,45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H가 2015. 7.경부터 피고의 D농장을 인수하기로 하고 닭을 사육하던 중 2016. 12.경 일부 닭이 AI에 감염되어 농장내 모든 닭을 살처분하게 된 사실, 원고의 닭 살처분에 대한 양산시 보상금과 사료환불대금이 모두 농장 명의자인 피고에게 2017. 1.경부터 2017. 4.경 사이에 지급되었는데, 위 합계 474,523,450원은 피고가 그 지급받은 액수 그대로 H의 계좌로 송금한 것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지급금은 사료대금 변제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의 이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변제 항변은 이유 없다.

라. 본소에 대한 피고의 과다정산금 공제 항변과 반소에 대한 판단

1)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은, 피고가 2002. 11.경부터 2012. 1.경까지 공급받은 사료대금은 합계 4,266,611,314원, 원고가 피고 계란 위탁판매대금에서 사료대금으로 공제한 금액이 합계 4,225,813,914원이므로, 그 차액이 40,797,400원이고 이를 초과한 사료대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양계농가별로 매월 계란대금에서 사료대금, 운영비, 행사지원금, 이자, 주유대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정산해왔는데, 2015. 3. 기준으로 볼 때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줘야 할 정산대금이 -794,601,261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위 정산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합계 4,225,813,914원의 사료대금을 모두 피고에게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사료대금 명목으로 별도로 235,000,000원을 지급하였더라도 사료대금이 과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오히려 위 정산대금의 지급이행으로 보인다. 더구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 235,000,000원은 원고에게 지급된 즉시 E에게로 지급되어 피고의 미지급 사료대금이 차감된 사실이 인정된다).

같은 이유에서 피고가 이미 원고에게 정산대금을 이자와 행사지원금 명목으로 과다하게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그 과다지급액의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앞서 든 증거와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정산대금이 -794,601,261원에 이르도록 그 정산대금을 원고에게 오랜기간 지급하지 않은 사실과 원고와 주변 양계농가가 일정 기간동안 계란 할인행사를 지원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이자와 행사지원금을 정산대상에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그러한 정산근거가 법률상 원인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2) 본소에 대한 정산 항변에 관한 판단

가) 2015. 3. 기준으로 피고의 정산대금이 -794,601,261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의 E에 대한 사료대금 미지급금은 2015. 3. 이후 내내 원금만 815,702,114원이어서 원고가 계산한 위 정산대금을 초과하는 사실, ② 이후 원고의

요청으로 피고는 사료대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E에 대한 사료대금 채무가 615,702,114원으로 줄어든 사실, ③ E은 2014. 2. 이후 피고에게 사료를 판매한 이력이 없는 사실(을 제5호증 6면 참조)이 각 인정되는바, 원고가 계산한 정산금보다 피고의 E에 대한 사료대금채무가 더 큰 현상은 원고가 사료대금을 제때 대신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피고의 계란대금에서 공제처리하는 것으로 정산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의 사료대금을 제때 대신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의 계란대금에서 공제처리한 만큼은, 그 후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그 사료대금을 지급하였더라도 피고에게 구상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사료대금 대납금 구상청구권은 그 범위에서 제한된다.

나) 그 범위에 대하여 살피건대, 2015. 3.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정산금액이 794,601,261원(그간의 사료대금과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정산서를 갱신하여 작성해준 사실이나 정산금액의 변동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때로부터 2016. 12.경까지 같은 금액으로 유지된다고 본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사료대금 명목으로 2016. 9.경 2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2016. 12. 기준 사료대금채무를 모두 대납하더라도 위 794,601,261원에서 2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594,601,261원(= 원고의 대납금액 794,601,261원 - 200,000,000원)만을 피고에게 상환청구 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94,601,26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납한 날의 다음 날인 2016. 12.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준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두, 판사 문기선, 판사 이고은